

의안번호	2209911
의 퇴 인	신성범의원
회 답 일	2025.6.9.
추계번호	25D239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각 420억 3,000만원 2년간 총 840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 계	연평균
보상금 지급(안 제9조)	42,030	42,030	84,060	42,030

주: 본 추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보상금을 준용하고, 거창사건등의 희생자 전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유족의 보상금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회)	관련자 및 유족을 결정하고,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3	안 제9조(보상금)	국가는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1.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1억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2.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1억 4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의무규정

4	안 제10조 (의료지원금)	거창사건등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함	의무규정
5	안 제11조 (생활지원금)	국가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5조 (추모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추모를 위한 시설의 관라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거창사건등 관련자명예회복심의 위원회)	—	미대상: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민간위원 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1996.1.5.제정)에 따라 피해신고자 접수 및 사실조사가 실시되어 1998년 12월 위원회 의결로 희생자 및 유족이 결정되었고,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개정안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이 다수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2431-300) 세부사업에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10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동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노근리사건 명예회복위원회, 거창사건등 명예회복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임
2	안 제4조(거창사건등 관련자명예회복실무 위원회)	—	미대상: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비용과 동일한 사유로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등이 다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위원 수당 등의 경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안 제9조 (보상금)	사망 또는 행방 불명 으로 확인된 희생자의 보상금	○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	현행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거창 사건과 관련된 상이자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한 상이자에 대한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희생자 유족회에서도 상이자를 10명 이내의 소수로 추정만 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현재 거의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이자 인원이나 상이 당시 장 해등금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 료지원금은 추계가 곤란
4	안 제10조 (의료지원금)		×	
5	안 제11조 (생활지원금)		×	개정안은 국가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탁받은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성금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곤란
6	안 제25조 (추모사업 등)		×	개정안은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소요가 있을 수 있으나 추진될 사업의 규모와 성격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가 어려워 추 계가 곤란. 참고로 현재 거창사건 추모공원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을 운영중으로 2025년 예산 기준 12억 8,200만원 이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 책정되어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및 유족의 수는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사망자 및 유족의 수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현재 등록된 유족 외에도 추가 적인 관련자나 유족의 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신 청인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 결정된 인원을 보상금 지급인원으로 산정¹⁾

1)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희생자의 유족에 대하여 1억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급 기준 대상을 유족으로 정할 경우 한 명의 유족이 2명 이상의 희생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하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보상금 지급을 유족이 아닌 희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보상금 관련 규정 비교

개정안	제9조 (보상금)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u>유족에 대하여는</u> 1억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제주4·3사건법	제16조 (보상금)	사망 또는 행방불명 <u>희생자로 결정된 사람</u> : 9천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거창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노력과 성과」, 2012. 12.

- 개정안 제20조제2항에서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진행될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 여부 등을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동 규정에 따른 차감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6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정안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결정이 이미 있었던 점으로 고려하여 개정안 시행 이후 2년에 걸쳐 50%씩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거창사건등 관련자 유족의 수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및 유족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망자 및 유족의 수로 가정함

□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96년 7월 4일까지 유족 등록 신청을 접수 받은 3,572건(사망자 956건, 유족 2,616건) 중 사망자 934명, 유족 1,517명을 관련자로 심의·의결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수는 934명

[표 3] 거창사건등 사망자 및 유족결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사망자			유 족		
	신청접수	인 정	불인정	신청접수	인 정	불인정
계	956	934	22	2,616	1,517	1,099
거 창	557	548	9	963	785	178
산청·함양	399	386	13	1,653	732	921

자료: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거창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노력과 성과」, 2012. 12.

나. 보상금액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²⁾하여 희생자 1명에 대하여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거창사건등의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유사 사례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각 420억 3,000만원, 2년간 총 840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합계
보상금 신청 건(a)	467	467	934
보상금 지급액(b)	90	90	90
추가재정소요(a×b)	42,030	42,030	84,0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보상금을 준용하고, 거창사건등의 희생자 전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유족의 보상금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